

2011. 11. 18.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안건명	비고
1325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6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7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11.08	2011.11.09	2011.11.14	2011.11.14	이 호 영 의 원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11.09	2011.11.09	2011.11.14	2011.11.14	총 무 과 장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11.09	2011.11.09	2011.11.14	2011.11.14	기 획 감 사 과 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을 추념수당으로 확대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충일 추념 수당 지급대상자 정의.(안 제2조 제5호)
- 현충일 추념 수당을 신설함.(안 제6조)
 - 현충일 추념수당으로 3만원을 지급함.
 - 현충일 행사 전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
 -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등에 대해 추념수당 환수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내 타 시군은 시의적절하게 당직비를 인상 현실화 하였으나
우리시는 2008. 1. 1일 이후 4년간 당직수당이 동결되었으며,
도내에서 가장 적은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원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수당 상향 조정 (안 제7조제5항)
 - 평일숙직 3만원 ⇒ 6만원
 - 일직·휴일전숙직 5만원 ⇒ 8만원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공무원 신규 충원과
관련하여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조직관리와
인력수급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정원 : 1,273 → 1,282명 (순증 9 / 6급이하 / 사회복지직)
 - 집행기관의 정원 : 1,254명 → 1,263명 (순증 9)
 - 일반직 정원 : 984명 → 1,010명 (전환인력 17 + 사회복지 순증 9)
 - 기능직 정원 : 226명 → 209명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17)
 - 기타 직렬 : 44명 (변동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변동 없음)

○ 정원책정기준 조정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일반직	현재	1%이내	7%이내	26%이내	30%이내	24%이내	12%이상	-
	조정	1%이내 (-)	7%이내 (-)	26%이내 (-)	31%이내 (증 1%)	25%이내 (증 1%)	10%이상 (△ 2%)	-
기능직	현재	-	-	7%이내	14%이내	19%이내	35%이내	25%이상
	조정	-	-	8%이내 (증 1%)	16%이내 (증 2%)	21%이내 (증 2%)	38%이내 (증 3%)	17%이상 (△ 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에게 참석보상금으로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현충일 추념수당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현충일 추념식 수당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없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참석 보상금(점심,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시의 경우 금년도 현충일 참석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7백 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조례가 개정될 경우 대상자는 3,500명 정도로 연간 소요예산액은 1억 5백만원으로 금년 예산 8백만원보다 9천 7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적극적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충일 추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아직 현충일 추념식에 대한 추념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실정이므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의 당직수당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수당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일숙직 수당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숙직자와 일직근무자에게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임.

현재 도내 시·군별 당직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평일 숙직의 경우 3만원을 지급하는 곳은 옥천군을 포함해 4곳이고, 4만원 지급은 영동군 1곳, 5만원 지급은 청원군을 포함하여 4곳, 6만원 지급은 제천시를 포함하여 2곳임.

또한 토요일, 공휴일 숙직의 경우 5만원을 지급하는 곳은 보은군을 포함 6곳, 6만원을 지급하는 곳은 청원군 등 4곳, 8만원 지급은 제천시 1곳임.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1억 7,655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직원복지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사무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공무원 신규 충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에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기능직 사무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무기능직 정원 82명의 20%인 사무기능직 17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17명을 증원하고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읍면동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인력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비율을 7급은 30%이내에서 31%이내로, 8급은 24%이내에서 25% 이내로 9급은 12%이상에서 10%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비율은 6급은 7%이내에서 8% 이내로, 7급은 14%이내에서 16%이내로, 8급은 19% 이내에서 21% 이내로, 9급은 35%이내에서 38% 이내로, 10급은 25%이상에서 17%이상으로 조정하여

직종별 정원 중 일반직 6급이하는 984명에서 1,010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226명에서 209명으로 감축하여 총 정원은 1,273명에서 1,282명으로 9명이 증가하였음.

- 검토결과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의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과 하위직급을 상위직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은데 3만원을 지급하는 이유는?

○답변 : 교통비, 식사비 등 모든 것을 감안하여 3만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정하게 되었음.

▶질의 : 현재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답변 : 참석자에게만 지급함.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도내 최고 금액보다는 공통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덜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답변 : 조사한 바에 의하면 7개 시군이 현재 전부 개정중에 있음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사무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동일 직급으로 이동하는가?

○답변 : 동일 직급으로 이동함.

▶질의 : 기존 일반직의 반발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불만해소는 어떻게?

○답변 : 상위직으로 승진을 3년간 보류한다든가 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5. 심사결과

-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대상자 : 현충일 추념수당 지급대상자 → 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 지급대상자
금액 : 현충일 추념수당 3만원 → 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 2만원
-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평일 숙직 수당 : 6만원 → 5만원
-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끝.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 중 “현충일 추념수당 지급 대상자”를 “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하고,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고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자”로 한다.

안 제5조제3호 중 “현충일 추념수당 지급”을 “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 지급”으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현충일 추념수당)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보상금은 2만원으로 한다.
2. 현충일 추념식 후 14일 이내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3. 대상자의 적격여부는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생략)</p> <p>5. “<u>현충일 추념수당 지급 대상자</u>”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4조에 <u>해당하는 자</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개정안과 같음)</p> <p>5. “<u>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 지급대상자</u>”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해당하고</u> <u>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자</u>를 말한다.</p>
<p>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p> <p>1. ~ 2.(생략)</p> <p>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과 <u>현충일 추념수당 지급</u>.</p> <p>4. ~ 6.(생략)</p>	<p>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_____ _____ _____ _____. 1. ~ 2.(개정안과 같음) 3. _____ _____ <u>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 지급</u>. 4. ~ 6.(개정안과 같음)</p>

개정안	수정안
<p>제6조(현충일 추념수당)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충일 추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수당금액은 3만원으로 한다.</p> <p>2. 현충일 행사 전에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p> <p>3. 대상자의 적격여부는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한다.</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념수당을 할수할 수 있다.</p> <p>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때</p> <p>나.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p> <p>다. 지급대상자 사망 후 현충일 행사 추념수당이 지급되었을 때</p>	<p>제6조(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참석보상금은 2만원으로 한다.</p> <p>2. 현충일 추념식 후 14일 이내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p> <p>3. 대상자의 적격여부는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한다.</p>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중 “6만원”를 “5만원”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정안	수정안
제7조(당직과 비상근무) ①(생략) ②~④(생략) ⑤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u>6만원</u> 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이 거나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공휴일 일직 근무자에게는 8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당직과 비상근무) ①(개정안과 같음) ②~④(개정안과 같음) ⑤----- <u>5만원</u> 의 -----.